

의안번호	제 519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의영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6년 11월 22일

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의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1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11월 22일

발 의 자 : 이의영 · 황규철 · 김인수 · 엄재창 ·
임병운 · 임희무 · 박우양 의원(7인)

1. 제안 이유

- 2011년 6월 「영유아보육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‘보육 시설’이라는 문구가 ‘어린이집’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제6조제2항 중 ‘보육시설의 장’을 ‘어린이집의 원장’으로 개정

3. 조례안 : 불 입

4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입

5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농정국 축산위생연구소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보육시설의 장” 을 “어린이집의 원장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수수료의 감면) ①(생 략)</p> <p>② 도내에 소재한 <u>보육시설의 장</u>, 유치원장, 학교의 장, 교육청(지원청 포함) 및 군부대장의 명의로 축산물에 대한 검사·시험등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.</p>	<p>제6조(수수료의 감면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u>어린이집의 원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관계 법령

□ 영유아보육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유아“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2. “보육“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.
3. “어린이집“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.